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34838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0614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노용균, 선병주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백성용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0. 2. 4. 접수 제1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9. 7.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D에게 투자금 미지급으로 인한 7억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20. 3.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1.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20. 2. 20.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20. 2. 21. C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는 2017. 9. 12.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시 E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은 202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2020. 2. 4. 피고에게 2020. 2. 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 당시인 2020. 2. 3. 무자력 상태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 1) 제1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D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7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피고는, D은 C이 아닌 G에게 자신이 소속된 원고의 돈을 빼내어 투자하였는데,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C에 부탁하여 원고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F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인정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은 C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6. C로부터 C의 부동산, 광업권 등 영업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C로부터 부동산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을 누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H가 2020. 2. 3.경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I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기한 C의 의무이행으로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이라는 별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11. 6.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등을 비롯한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의 전 대표이사 H와 현 대표이사 I가 2020. 2. 3. 피고의 사업권을 I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2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C에 대한 영업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거로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로부터 부동산 및 광업권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는 그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②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는 별지 제3 내지 6항 기재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되 F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F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충분하고, 굳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을 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질적 금전거래 없이 형식적으로만 C 명의로 마쳐놓은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의 영업일체를 양수한 피고로서는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그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임에도 굳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로받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을 제4호증 매매계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8. 11. 6.이고, 증인 F도 그때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가 C 인수자금 명목으로 F에게 이체한 9억원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4월경부터 2018. 6월경까지 이체되어 그 시기가 맞지 않는 점, ⑤ 증인 F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굳이 을 제10호증 각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⑥ 오히려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으면 F에게 투자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순위보전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악의

한편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4.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914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별지 목록

1. 강원도 평창군 전 369㎡.
2. 강원도 평창군 전 1089㎡.
3. 강원도 평창군 대 991㎡.
4. 강원도 평창군 대 4684㎡.
5. 강원도 평창군 대 256㎡.
6. 강원도 평창군 대 135㎡. 끝.

